

1997. 12.
제71회 정기회

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사 회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홍 표)

199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 본 예산안은 1997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세입·세출예산 총괄

○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1,575,620천원으로 '97 당초 예산액 70,114,879천원보다 1,460,741천원이 증액됨

-일반회계 : 61,395,398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56,312,582천원보다 5,082,816천원 증액

-특별회계 : 10,180,222천원으로 '97 당초예산액 13,802,297천원보다 3,622,075천원 감액

○ 세입의 재원구성(단위 : 천원)

-일반회계

· 지방세	-----	11,937,900
· 세외수입	-----	10,556,344
· 조정교부금	-----	25,694,000
· 보조금	-----	13,207,154

-특별회계

· 세외수입	-----	5,799,117
· 보조금	-----	4,381,105

○ 세출내역(단위 : 천원)

-일반회계

· 경상예산	-----	30,076,677
· 사업예산	-----	30,310,238

- 채무상환 ----- 388,483
- 예비비 ----- 620,000

-특별회계

- 경상예산 ----- 135,215
- 사업예산 ----- 10,024,307
- 예비비 ----- 20,7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총액은 41,404,321천원(총 세출의 58%)으로 '97 당초예산액 40,708,065천원보다 696,256천원 증액

-일반회계 : 31,224,099천원(일반회계 총 세출의 51%)으로 '97 당초예산액 26,905,768천원보다 4,328,331천원 증액

-특별회계 : 10,180,222천원(특별회계 총 세출의 100%)으로 '97 당초예산액 13,802,297천원보다 3,622,075천원 감액

○ 실·과·소별 세출예산액 내역(단위 : 천원)

-일반회계

- 사회복지과 ----- 5,690,402
- 가정복지과 ----- 8,843,998
- 환경보호과 ----- 393,866
- 청소행정과 ----- 8,192,191
- 위생과 ----- 45,191
- 지역경제과 ----- 638,480
- 지역교통과 ----- 272,482
- 건설과 ----- 6,880,134
- 건축과 ----- 52,715
- 지적과 ----- 214,640

-특별회계

- 사회복지과(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889,105
- 지역교통과(주차장특별회계) ----- 2,062,547
- 청소행정과(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 -- 4,228,570

□ 검토의견(전문위원 박 홍표)

1. 예산·결산에 대한 일반적 사항

'98 예산안을 비롯한 최근 2~3년간의 결산서 및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

(1) 예산안 및 첨부서류의 규정된 기일내 제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2

· 특히 중기재정계획

(2)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부서별 작성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 산출기초를 병행표기할 것을 제안함

예 : 가정복지과 예산안중

① 151쪽, 홀로사는 노인 가정도우미와 함께의 경우 (200명, 365일)만 명시된 채 7,3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전혀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음.

② 155쪽,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비와 구비 모두 15,480천원으로 30,96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등노인복지회관의 어떠한 내용에 어떻게 사용되는 액수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음.

예 : 환경보호과 예산안중

① 162쪽, 공익근무요원 봉급의 경우

- '97 당초예산안은 $14,940\text{원} \times 5\text{명} \times 12\text{월} = 897\text{천원}$

- (5명, 12월)로 같으나 단가표시 없이 945천원만 표기

② 16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의 부과업무보조의 경우,

- '97 당초예산안에는 $17,800 \times 280\text{일} \times 2\text{명} = 9,968\text{천원}$ 인데 비하여

- (2명, 280일)은 같지만 단가표시가 없이 10,920천원으로 되어 있음.

(3)예결특위에서 자세히 논의될 사항이지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임.

예: '95 세입세출결산과 '96 세입세출결산의 경우, '95 결산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7,604,544,339로 되어 있으나 '96 결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6,935,014,000으로 계상되어 있음.

예 :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의 계속비 집행 작성 문제점

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양3동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에 관하여(209쪽)

- '93~'97사이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의 내역이 기재

- 계속비사업에서는 잉여액이 체차 이월되어야 하는데 '93~'97까지 해마다 잉여액을 다음연도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이월액만을 다음년도로 이월

- 199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995년에 669,530,33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고 해놓고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당해연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5,649,346,000원으로 동일하게 계상됨.

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과 관련 (210쪽)

- 이 사업은 '96 ~ '97사이의 계속비사업인데도 '97, '98의 년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199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이월액을 500,000,000원으로 기재해 놓고도 오히려 예산액에서 그 액수를 차감하여 예산현액을 4,857,15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2. '98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

(1)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비중

- 구정의 역점시책 6개중 환경이 존중되는 생활공간 조성, 지역의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 도모 등 4개항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투자비율('97~2001)에도 반영

- '98예산안에서도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이 총 세출의 51%
-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총 세출의 51%
-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총 세출의 100%

(2) 예산책정의 답습주의 또는 점증주의

경상적 경비의 책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예산책정의 답습주의나 점증주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무사안일로 비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임.

예 : 가정복지과 예산안중

① 158쪽, 구 청소년 공부방중 구 청소년공부방 학생 탐방견학 차량임대료에서

- '97당초예산 : $300,000\text{원} \times 2\text{대} \times 2\text{회} = 1,200\text{천원}$

- '98예산안 : (3대, 2회)로 명시하면서 1,200천원으로 계상

② 159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특근급식에서

- '97당초예산 : $5,000\text{원} \times 4\text{명} \times 4\text{회} \times 12\text{월} = 960\text{천원}$

- '98예산안 : (5명, 월4회, 12월)로 하면서 960천원 계상

예 : 환경보호과 예산안중 166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 무전기 항목을 보면, '97 당초예산에서는 13대에 9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98예산안에는 29대이면서도 똑같이 900천원이 계상됨.

(3)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비 보조사업

복지사업의 예산이 국비와 구비 또는 국비, 시비, 구비의 일정 비율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국비보조의 변경 특히 감액이 있을 경우 꼭 그 비율만 고집하여 구비를 감액하는 것은 대상자 1인당의 복지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예 : 사회복지과 예산안중

① 146쪽, 영세장애인 자녀학비보조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자 6명, 국비 2,776천원, 구비 694천원, 합계 3,470천원 → 578천원/1인

- '98 예산안 : 대상자 6명, 국비 2,475천원, 구비 619천원, 합계 3,094천원 → 516천원/1인
- ②146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자 253명, 국비 95,634천원, 구비 40,986천원, 합계 136,620천원 → 540천원/1인
 - '98 예산안 : 대상자 253명, 국비 80,514천원, 구비 34,506천원, 합계 115,020천원 → 455천원/1인

예 : 가정복지과 예산안중

- ①153쪽,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 28개소, 국비 1,112,754천원, 시비 474,611천원, 구비 474,611천원, 합계 2,061,975천원 → 73,642천원/1개소
 - '98 예산안 : 대상 24개소, 국비 831,153천원, 시비 361,804천원, 구비 361,804천원, 합계 1,554,761천원 → 64,782천원/1개소
- ②154쪽, 홀로사는 노인용돈 지급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자 34명, 시비 7,200천원, 구비 7,200천원, 합계 14,400천원 → 514천원/1인
 - '98 예산안 : 대상자 28명, 시비 5,880천원, 구비 5,880천원, 합계 11,760천원 → 420천원/1인
- ③157쪽,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자 61명, 국비 8,906천원, 구비 2,226천원, 합계 11,132천원 → 182천원/1인
 - '98 예산안 : 대상자 62명, 국비 8,125천원, 구비 2,031천원, 합계 10,156천원 → 164천원/1인
- ④159쪽,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 46세대, 국비 25,981천원, 구비 6,473천원, 합계 32,364천원 → 703천원/1세대
 - '98 예산안 : 대상 53세대, 국비 26,076천원, 구비 6,519천원, 합계 32,595천원 → 615천원/1세대
- ⑤160쪽, 소년소녀가장 야영수련회에서
 - '97 당초예산 : 대상자 43명, 시비 1,000천원, 구비 1,000천원, 합계 2,000천원 → 47천원/1인

- '98 예산안 : 대상자 53명, 시비 1,000천원, 구비 1,000천원,
합계 2,000천원 → 38천원/1인

(4) 계속비사업조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사업년도와 연부액**
을 기재할 것을 제안함.

1) 청소년수련관건립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94~'98 사이의 사업으로 '98년도 예산액이 1,409,852
천원으로 그중 시설비에 1,04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1쪽, 가정복지과 자
체사업중 청소년수련관 신축에서는 시설비가 757,000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93~'97사이의 계속비사업이므로 그 집행잔액이 남아
아직 용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98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에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함이 옳다고 보임.

3) 폐기물처리센터조성과 관련하여

이는 '96~'98사이의 계속비사업이므로 '99년 이후 계획액 책정은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됨.

(5) 기타

'98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점 이외에 다음의 의문들이
있었음.

- ① 무등복지회관 노인대학 강사수당은 1시간당 30,000원, 구 청소년
공부방 강사수당은 1시간당 40,000원인데 반하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강사수당은 1시간당 7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 ②대한노인회서구지회에 정액보조가 8,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한문교육과 노인대학 강사수당으로 3,300천원을 더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가?
- ③185쪽, 지역경제과의 중국 평도시 투자설명회 개최 중 외빈 초청여비가 2,828천원이 계상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며, 본 행사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외화내빈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과도한 액수는 아닌가?
- ④185쪽, 지역경제과의 분재·수석전시회에 3,191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의 경제여건이나 구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하다면 개최의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⑤188쪽, 지역교통과 도시문제 교양지 구독에 768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4부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⑥166쪽, 환경보호과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에 3,73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95쪽, 건설과 광주천 고수부지 잡초제거 및 하상정비 관리에는 2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주천 고수부지의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는 하나의 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임.

3. 결어

제71회 정기회를 맞아 여러 가지 업무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제출된 '98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에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참고가 되어 주도면밀한 예산안 심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